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55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0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19. 10. 0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19. 10. 16. 총무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주민 참여 제한 소지가 있는 내용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 지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개모집한 날 현재의 자격으로 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
육이수를 위원 선정(위촉)시의 자격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나. 결원으로 위촉한 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명시(안 제8조)
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명시(부칙)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1) 기획감사담당관(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181호
 - 가) 예고기간: 2019. 9. 3. ~ 2019. 9. 23.(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 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참여 제한 소지가 있는 내용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 지역을 명시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이수를 위원 선정 시의 자격으로 변경하고, 결원으로 위촉한 위원 임기를 명시, 부칙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명시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근거한 내용에 적정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19. 10.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